제3046호
2023. 11. 24.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주 재 봉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람	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규 칙]
제77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제77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

◉ 고 시
제2023-70호 :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73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4호 중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구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3조제2항 제2호 중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생 략)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생 략)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의 가액 위 안의 금품등	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3.8.29. 국무회의 의결 , '23.8.30. 시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를 따르도록 개정

나. '산하기관'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각 목을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74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구 분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비고
	분 야	내 용		
온라인	소통통합플랫폼 가입	소통플랫폼 신규 가입	1,000	
	구민제안	소통플랫폼을 통한 정책 제안	1,000	단순 민원/건의 제외
		소통플랫폼을 통한 정책 공감	100	
		소통플랫폼을 통한 정책 투표	300	
		소통플랫폼을 통한 정책 채택	10,000	
	설문조사 참여	소통플랫폼을 통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1,000	
	주민참여예산제	소통플랫폼을 통한 참여예산 제안	1,000	
		소통플랫폼을 통한 참여예산 투표	300	
		소통플랫폼을 통한 참여예산 채택	5,000	
	회의/모임 행사/교육	소통플랫폼을 통한 회의·모임·행사·교육 참여 ※ 지역공동체, 구정발전과 관련된 활동에 한하며, 자기계발, 개인모임 등은 제외	1,000	기관주관
	기타	소통플랫폼을 통한 그 밖에 구정 참여	100 ~ 5,000	자체 계획에 의함
	구정참여왕	포인트제 참여 우수자 선발	5,000~ 10,000	반기별 누적포인트 상위 5명 선발
오프라인	공식 구정행사 참여	기념식 등 공식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	1,000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석한 주민	1,000	
	교육 참여	지역공동체,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주민 ※ 자기계발, 개인 건강 관련 교육 제외	1,000	1회/1시간 이상
	동주관 행사 참여	지역축제 등 공식행사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 (진행자, 행사추진위원 등)	1,000	사전 자체계획 필수
	우수 자원봉사자	연 100시간 이상	10,000	연 1회 (12.31.기준)
	환경정비 참여	정례화 된 환경정비(대청소) 참여 주민	1,000	사전 자체계획 필수
	재난복구 참여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한 주민	5,000	
	기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 5,000	자체 계획에 의함

※ 단순 건의사항 및 포인트 획득만을 위한 중복·반복적 참여 시 포인트 부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후 시책개발에 따라 해당부서 요청 시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참여활동의 포인트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된 사항에 한해 부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1]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구분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비고
	분 야	내 용		
온라인	기타	그 밖에 공익성 있는 구정 주민참여	100 ~ 5,000	자체계획에 의함
오프라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환경정비 참여	각종 환경정비 행사	2,000	<신 설>

개 정 안

[별표1]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구분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비고
	분 야	내 용		
온라인	기타	소통플랫폼을 통한 그 밖에 구정 참여	100 ~ 5,000	자체계획에 의함
오프라인	동주관 행사 참여	지역축제 등 공식행사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 (진행자, 행사추진위원 등)	1,000	사전 자체계획 필수
	우수 자원봉사자	연 100시간 이상	10,000	연 1회 (12.31.기준)
	환경정비 참여	정례화 된 환경정비(대청소) 참여 주민	1,000	사전 자체계획 필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주민소통 포인트 부여 대상을 정비하여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 소통창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통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변경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70호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2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처분일자 : 2023. 11. 21.

2. 처분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별표1】

3.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서울-주택 2019-0212	(주)메이저원	김윤태	서울 중구 다산로12길 11, 2층 202호 (신당동)	영업실적 미제출 및 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 3개월 (2023.11.21. ~2024.2.20.)
서울-주택 2022-0176	(주)빌드종합개발	김봉옥	서울 중구 마른내로 137, 301호 (광희동1가, 상명빌딩)	영업실적 미제출 및 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 3개월 (2023.11.21. ~2024.2.20.)

4. 안내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02-3396-5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